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2060
번 호	

제출일자 : 2021. 12. 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보고이유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하였음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관계법령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9조

다.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3. 센터운영 현황

가. 위 치 :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58길 6-2, 3층

나. 운영예산 : 741백만 원

다. 운영방식 : 민간위탁

라. 인 원 : 21명(센터장, 부센터장, 상임팀장1, 팀장2, 팀원16)

4. 위탁운영 현황

- 가.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나. 위탁사무 :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관리 및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등
- 다. 수탁기관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5. 재계약 경위 및 향후일정

- 가. 2021. 9. : 재계약 요청
- 나. 2021.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재계약 적정 판단)
 - 심사결과 : 88.8점 재계약 의결(70점 이상시 적격)
- 다. 2021. 12. : 협약 체결 및 공보 게재
- 라. 2022. 01. : 위·수탁 개시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 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9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 재계약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